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오토캠핑장내 전기시설 설치로 인해 시설사용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 발생이 빈번,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설사용료와 감면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

⑴ 시설사용료 정비(안 제4조)

· 별표 1의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 2018년 5월 오토캠핑장 전기시설 설치 → 인상 요인 발생

- 5인 기준 일행 초과 입장 시 입장료 징수 근거 마련

⑵ 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감면 정비(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2호 감면 범위에 대한 후단 신설

· 제6조제1항제3호 다자녀 혜택 전국 → 성주군민으로 축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2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9. 6. ~ 9.26.)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획감사실-6867(2018. 9. 4.)〕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47576(2018. 8.2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성주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군”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다자녀”를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1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사용기준	기준인원 및 기준차량	사 용 료		비고
				성 수 기 (7월~8월)	비 수 기 (1월~6월, 9월~12월)	
오토캠핑장	8m × 9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10m × 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캠핑사이트	6m × 7m	1면/1일	5인/1대	13,000	10,000	
	8m × 10m	1면/1일	5인/1대	18,000	15,000	

비고

1.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2.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40%
 -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의 100%
3.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당 일 : 5,000원
 - 1박 2일 : 10,000원
 - 2박 3일 : 15,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주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2조(정의) ----------.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다. 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라.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2. ----------. 다만, 한

신설>	면만 적용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나. 「장애인복지법」----------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마.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마.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서 신설>	3. ---------- 사람.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사 용 료		비고
		성 수 기 (7월~8월)	비 수 기 (1월~6월 9월~12월)	
오토캠핑장	8m × 9m	20,000	17,000	
	10m × 10m	25,000	22,000	
캠핑사이트	6m × 7m	10,000	7,000	
	8m × 10m	15,000	12,000	

※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1]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규 격	사용 기준	기준인원 및 기준차량	사 용 료		비 고
				성 수 기 (7월~8월)	비 수 기 (1월~6월 9월~12월)	
오토캠핑장	8m×9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10m×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캠핑사이트	6m×7m	1면/1일	5인/1대	13,000	10,000	
	8m×10m	1면/1일	5인/1대	18,000	15,000	

1.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2.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하며,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일 사용료의 40%
 -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의 100%
3. 기준인원 및 차량을 초과한 경우 한 면당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당 일 : 5,000원
 - 1박 2일 : 10,000원
 - 2박 3일 : 15,000원